

## ‘문맹인의 난민신청’ 사례를 통해서 본

###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현황

#### 1. 들어가며

2012년 제정, 2013년 7월 시행되어 10년을 맞이하는 난민법은 제2장에서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이라는 표제 하에 난민인정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수행방식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난민면접을 녹음·녹화하도록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무원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며,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법적,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난민심사과정의 절차적 보장은 미흡하고, 난민심사의 인프라와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는 낮은 난민인정율로 드러나고 있다<sup>1</sup>. 이번 ‘문맹인의 난민신청’ 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그것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토론문을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

<sup>1</sup> 2022년도 한국의 난민인정율(해당연도 심사결정자 수 대비 인정자 비율)은 2.03%이다. 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 숫자가 22명,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인정자 숫자가 14명,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인정자 숫자가 11명, 가족결합을 통한 난민인정자 숫자가 61명, 재정착난민이 67명이었다. 근 3년간 1%를 넘지 못하던 난민인정율이 2% 정도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한 숫자는 22명에 불과하고, 2021년 EU 난민인정율이 평균 35%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 2021년 조사자료 기준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을 비교하였을 때 18위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저이다. 난민인권센터 통계연구소,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4>, 연합뉴스, [팩트체크] 한국, 난민 지위 인정 최하위권?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25300502>

## 2. 첫 단추: 난민신청

### (1) 난민인정신청서의 작성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인정신청서는 ①인적사항, ②한국 입국사항, ③한국 내 체류사항, ④국적(시민권) 및 영주권, ⑤혼인사항, ⑥가족사항, ⑦학력사항, ⑧경력사항, ⑨군복무사항, ⑩거주사항, ⑪여권사항, ⑫한국 사증사항, ⑬자국 출입국사항, ⑭난민인정 신청사항, ⑮난민인정 신청 사유, ⑯서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성자(번역이 된 경우 번역을 한 번역인의 서명도 포함)의 서명 및 작성일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짜가 난민인정신청일이 되고, 이에 따라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현재의 난민인정신청서 및 난민재신청자용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서식 상의 난민인정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 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sup>2</sup>. 이에 따라 소수언어를 구사하

<sup>2</sup> 당시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은 난민신청자가 조금 더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 입법취지를 밝히며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고 재신청자용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였으며, 각 신청서 맨 앞에 난민신청서 작성방법, 난민신청자의 권리, 난민신청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을 새로 추가하였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번역하도록 하는 개정에 반대하며 당시 아래와 같은 입법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난민인권센터)

1.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 입법예고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지 1 서식(난민인정신청서) 상의 난민인정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번에 따르면“신청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기존에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어, 난민신청 자체에 장벽이 생기거나, 부정확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을 하는 과정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되어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를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는 것은 난민심사를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모국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이 구비되

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한국어/영어 외의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는 출입국에서 통번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통번역 업체를 찾아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보 없음과 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난민신청자는 지인, 심지어는 출입국에서

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통역 및 번역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심사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4. 종전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신청번호 1AA-1901-300330)에 대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출신국 및 사용 언어가 다양함에 따라 난민 신청서 작성 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 청에서는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여 난민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별표 제 1 호 난민인정신청서 양식의 ‘난민인정신청서 작성방법’에 명시한 내용에서는 답변 주셨던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5. 난민신청자가 모국어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법무부 답변 내용

1.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서식 개정은 난민신청자가 조금 더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 맨 앞에 난민신청서 작성방법, 난민신청자의 권리, 난민신청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신청서를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는 것은 난민심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별지 서식이 개정된 후 난민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와 같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난민신청이 많은 국가 언어로 신청서를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다만, 난민신청자가 모국어로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실제 난민심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토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 대부분이 신청서가 모국어로 작성된 경우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법무부는 난민신청이 많은 서울외국인청 등에 통역 직원을 배치하여 접수 단계에서도 통번역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5. 국가가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통역 및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난민법 개정 및 관련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번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난민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사, 변호사 등을 찾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유일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인 난민인정신청서는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작성되기 어렵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장시간의 난민심사대기 이후 ‘난민지위 불인정’으로 귀결된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sup>3</sup>.

## (2) 공무원의 협력의무

본 사례보고회의 주요쟁점인 ‘문맹인의 난민신청’에 관하여도 난민법은 미흡하지만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법 제5조 제3항은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난민법 제5조 제4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협력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sup>3</sup>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조의2(통역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한국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통·번역 지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 <https://nancen.org/2329>

## 난민의 정의 Definition of Refugee

“難民”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A “refugee” refers to an alien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herself of the protection of his/her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her former residence (hereinafter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방법 How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난민인정 신청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 \* 보호 중 난민인정의 신청은 체류지 관할과 무관하게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합니다.
-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난민인정신청서는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게시)
  - \*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글을 모르거나 장애로 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인정신청서는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난민인정신청은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민법상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인정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민법 제47조)

- A refugee status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Chief of an Immigration Officer within jurisdiction.
  - ▶ Application documents are submitted to an Immigration Office for Application and transferred to an Immigration office for Determination.
  - ▶ Application during deten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regardless of applicant’s residential jurisdiction.
-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must be submitt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 An applicant must provide the passport, and Residence Card (if available), and supplementary documents (if available), for reference in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 ▶ Please ask for assistance if you are illiterate or unable to fill the application due to disabilities.
- The application should be filled out i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case of writing in the applicant’s native language, a translated version must be attached.
-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by proxy is not allowed,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him/herself must apply for the procedure.
  - ▶ A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 a minor can be applied by him/herself or by legal representative.

A person who was recognised as a refugee or permitted by means of submitting false documents, giving false statements or by withholding facts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s not exceeding 10 million Korean Won, (Article 47 of Refugee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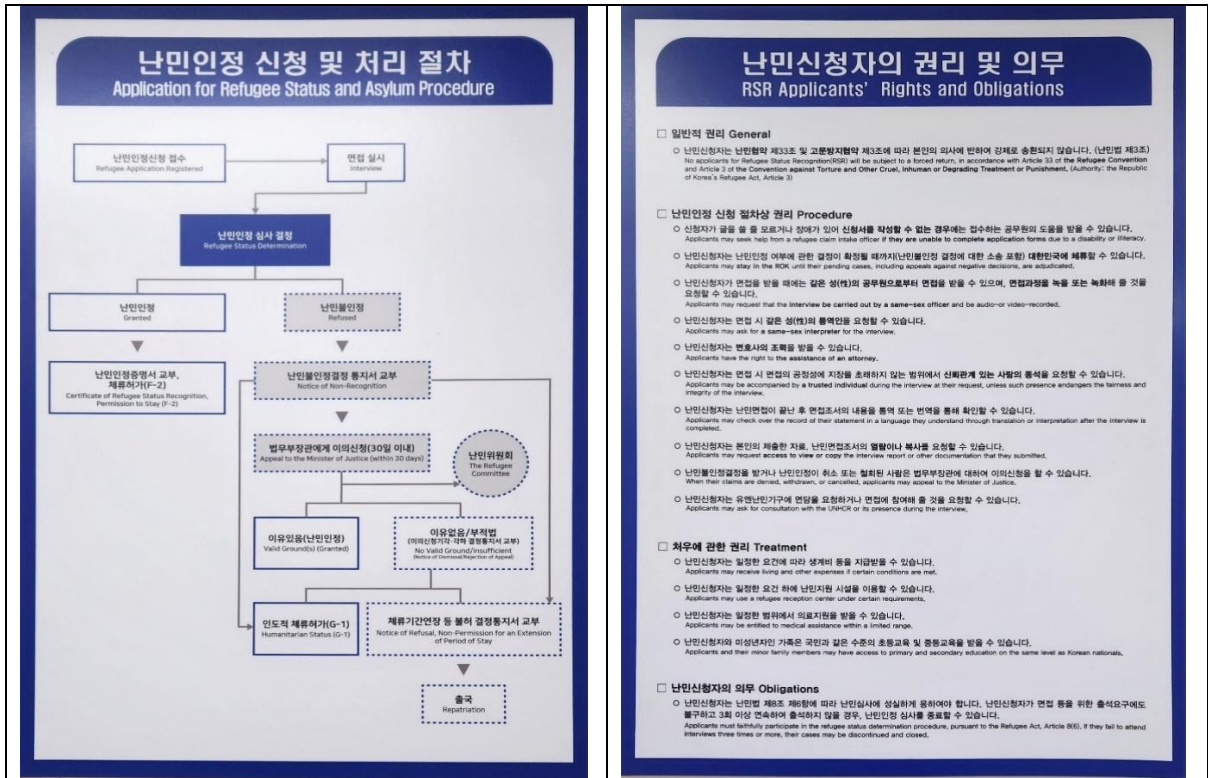
그러나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접수창구만 운영되고 있을 뿐,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음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판별할 절차도 없다. 출입국 한 쪽 벽에 위 난민법 규정을 게시한 안내판만 있는 셈인데, 위 난민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난민인정신청서가 단 1부라도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최근 소송을 통해 공개된 2020. 4. 자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지침에서는 ‘Ⅲ. 대한민국 안에서의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부분에서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접수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작성 또는 난민인정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의 진술 녹음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세부 지침 내용을 두고 있었으나, 2022. 9. 자로 개정된 난민업무지침에서는 이 내용마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사례 이외에도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문맹인 난민신청자의 사례가 소개되어 공유한다.

“난민신청에 대해 알아보다가 조력자 K를 만났습니다. 내가 글을 쓸 수 없는 문맹임을 밝혔더니 주변에서 그를 데려왔지요. K는 한국 체류기간, 출신 국가, 사유 등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있지만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만원을 요구했고, 250분을 지불했습니다. (중략) 나는 내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K는 그 내용을 어떻게 신청서에 풀어 쓸지 제안했어요. (중략) 대신 작성하는 게 적발될까 봐 구석에서 작성했고, 작성이 끝난 후 내가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5면)

### (3) 정보제공

난민법 제7조에서는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③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④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의 사항을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은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게시된 안내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난민신청자 가이드북(Guidebook for Refugee applicants in Korea) 파일을 찾을 수 있었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의 안내나 정보제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위에 언급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난민신청절차와 관련한 정보접근'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니터링에 참가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정부로부

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난민신청자들이 신청절차 관련 정보를 얻은 곳은 친구나 지인, 인터넷, NGO, 종교단체 등이었다<sup>4</sup>. 또한 위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난민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절차로 전달된 것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절차적 혹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sup>5</sup>.

#### (4) 변호사 조력 및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난민심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과 심사진행 과정, 특히 난민면접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에 이를 선언하는 차원의 법조문 하나만 있을 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사제도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변호사 조력 없이 난민신청 과정을 혼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난민면접에 동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전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신뢰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동석신청을 하여도 많은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다.

### 3. 유일한 심사 : 난민면접

---

<sup>4</sup>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4면

<sup>5</sup> 위 보고서 11면

### (1) 난민면접의 중요성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적이고, 거의 유일한 조사절차이다. 난민허위면접(면접조작)사건 당시 나온 주요 결정들에서는 난민면접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이러한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본국인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인데다가, 외국인인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난민심사자 역시 그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난민심사를 하게 된다.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 이외에 난민법 제10조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난민면접절차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라 할 수 있다(난민면접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가단5200580 판결).”

“난민법에 난민면접과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난민면접이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난민인정심사절차이고, 그 면접심사에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면접조서는 난민불인정결정이 난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신청(2차 심사) 및 행정소송인 법원 재판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고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난민면접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8진정0572400,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밀려드는 난민사건 처리를 위해 개개의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난민면접을 실시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 난민신청자들의 신청사유가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난민사유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난민심사관으로서 편견과 예단을 버리고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질의 응답이 오고갈 수 있도록 면접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면접내용이 정확하고 왜곡 없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난민불인정결정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7누47245판결).”



## (2) 난민면접과 통역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난민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을 위하여 정확한 통역은 필수 요소다. 따라서 통역 제공 여부와 통역의 질은 난민지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자격을 부여하여 난민심사에서 통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랫동안 난민인정절차 상 통역을 포함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국내 난민절차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음에도 그간 난민전문통역인을 양성하고 선발하여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고,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난민전문통역인 자격인정 혹은 적합성 인정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평가 및 검정이 선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에게 요구되는 통역능력, 난민전문통역인의 선발기준 및 선발방식 등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난민전문통역인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아무런 세부규정이 없고 난민전문통역인 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역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통역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

난민면접조작사건 이슈화 이후 법무부는 2018년 4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풀을 재정비하고, 난민통역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0년에도 난민통역 품질평가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sup>6</sup>, 2021년 난민통역인증제가 도입되었다<sup>78</sup>. 난민통역인증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난민통역인을 검증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증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협력하여 난민통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선이라 할 수 있으나, 통역인 역량 및 윤리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의 확충 및 다양한 소수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난민통역인증제의 운영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sup>6</sup> 법무부는 2018. 9. 6. 자 설명자료를 통하여 2018년 4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풀을 재정비하고, 난민통역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2019. 7. 23. 자 기관소식에서는 2019년 4월 불어 1명, 아랍어 1명의 난민전문 통역인을 추가로 채용하여 2019년 6월 기준 총 2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 173명을 위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2019년 4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9. 12. 3. 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0월 위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난민통역인 역량별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연구 용역 결과 교육 등이 필요한 난민통역인 등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에도 난민통역 품질평가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2. 12. 31. 기준 31개 언어 총 181명이 위촉되어 있고, 영어(35명), 중국어(35명), 러시아어(18명), 아랍어(11명), 우르두어(3명), 기타(79명) 순이었다. 난민인권센터 통계연구소,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5>

<sup>7</sup> 아주경제, 2022. 1. 19. 자 기사 “법무부, 난민 전문 통역 인증제 시행…30개 언어 160명 인증” <https://www.ajunews.com/view/20220119115757641>

한겨레, 2023. 1. 11. 자 기사 “‘영터리 난민면접 막는다’…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32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320.html)

<sup>8</sup> 2019년까지 단순 통역비만 있었던 심사 예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난민통역평가라는 항목으로 4천만 원이 책정되었고, 2021년에는 난민통역인증제가 도입되어 7천 9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인권센터 통계연구소 “최근 3년 난민 관련 예산 (2020~2022)” <https://nancen.org/2310>

### (3) 난민면접 녹음·녹화

난민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은 난민 지위 인정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난민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난민면접조작사건을 계기로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2018. 9. 6. 자 설명자료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난민신청자 본인이 원치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을 전면적으로 녹음·녹화를 하여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실제로도 난민면접 시작 시에 녹음·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였다는 점을 면접조서에 “면접 녹화 고지 필” 등의 형태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공개자료에 따르면 면접 영상 녹화가 대부분의 난민면접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

<sup>9</sup> 난민인권센터 통계연구소,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5>

74. 2022년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면접건수와 실시건수)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면접건수	3,629	801	606	309	485	71	373
녹화건수	3,488	801	585	304	483	71	372

※ 2018년 7월부터 난민면접 시 녹음·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녹음·녹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75. 2022년도 사무소별 영상녹화 파일 열람 신청 및 열람 허가 건수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신청건수	3	2	0	1	0	1	0
허가건수	3	2	0	1	0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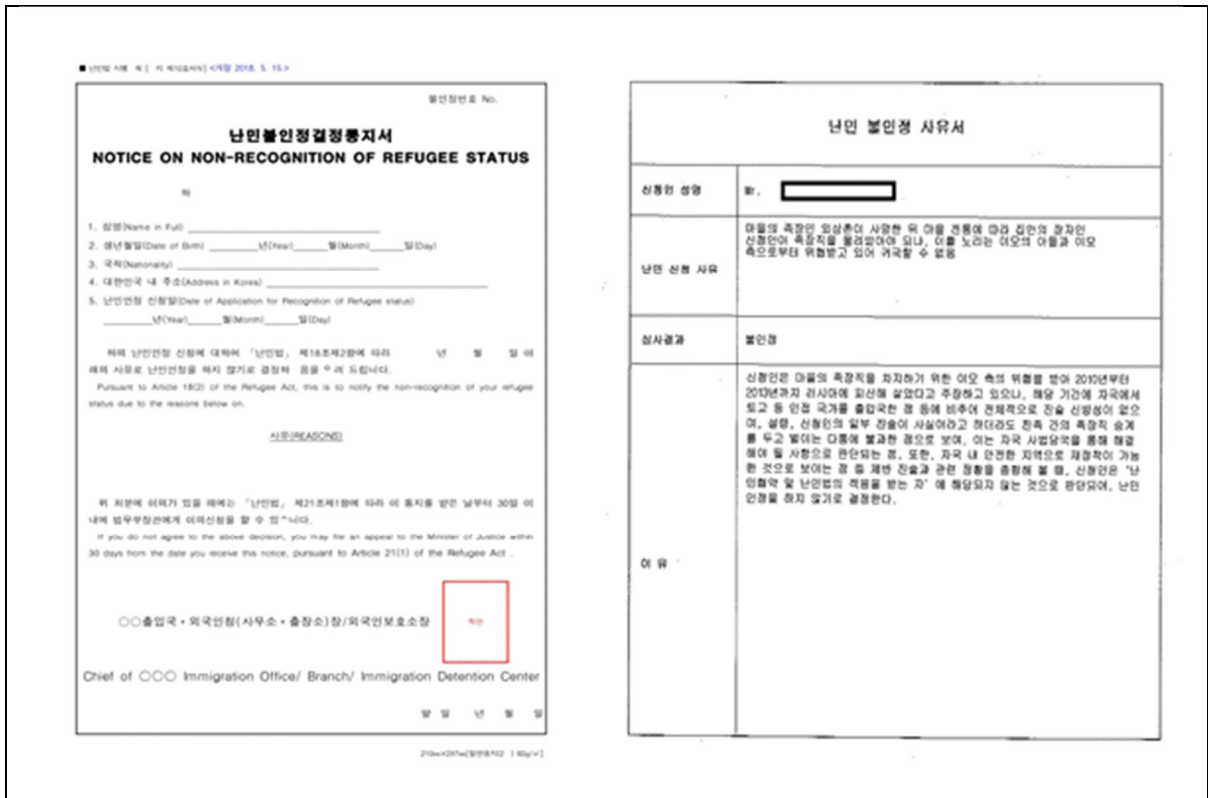
난민면접에 대한 영상녹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난민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난민면접에 대한 영상녹화를 시행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업무지침에 의거해 열람까지는 가능하지만 영상녹화 기록을 파일로는 공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및 조력자를 선임하여 출입국이 지정한 날짜에 출입국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열람할 수밖에 없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진다. 영상녹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구제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변호사 등 조력인과 함께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 파일을 교부 받고 이를 자신의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바꿔야 하는 개선과제가 남아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근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sup>10</sup>.

<sup>10</sup> 한겨레, 2023. 4. 20. 자 기사, [단독] ‘난민 면접 조작’ 이후 녹화 기록 있지만…법무부 “공개는 안 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652.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652.html)

(4) 난민심사 및 결과 통지의 통·번역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아무런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적법·타당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고 난민신청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직결되는 문서에 대한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p>■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9. 12. 31.&gt; (첫번째쪽)</p> <p style="text-align: center;"><b>난민면접조서</b></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참석자</td> <td>난민신청자</td> <td>성명</td> <td>국적</td> <td>생년월일</td> </tr> <tr> <td>담당공무원</td>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r> <tr> <td>동역인</td> <td>성명</td> <td>국적</td> <td>생년월일</td> </tr> <tr> <td>기타</td> <td>성명</td> <td>국적</td> <td>생년월일</td> </tr> <tr> <td colspan="4">난민신청자와의 관계</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일시</td> <td>시작</td> <td>년 월 일 시 분</td> </tr> <tr> <td>종료</td> <td>년 월 일 시 분</td> </tr> <tr> <td>휴식</td> <td>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td> </tr> </table> <p>장소</p> <p>사용언어</p> <p style="text-align: center;">[안 내]</p> <p>◆ 난민의 정의</p> <p>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p> <p>◆ 이 면접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p> <p>◆ 신청자가 면접과정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면접이 종료된 후에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p> <p>◆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질지(80g/㎡)]</p>		참석자	난민신청자	성명	국적	생년월일	담당공무원	성명		생년월일	동역인	성명	국적	생년월일	기타	성명	국적	생년월일	난민신청자와의 관계				일시	시작	년 월 일 시 분	종료	년 월 일 시 분	휴식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p style="text-align: right;">(대지번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0px; width: 100%;"></div>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면접조서 내용확인</td> <td>시간</td> <td>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td> </tr> <tr> <td>본인 확인한</td> <td>본인은 면접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 또</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난민신청자</td> <td>(서명)</td> </tr> <tr> <td>동역인</td> <td>(서명)</td> </tr> <tr> <td>담당공무원</td> <td>(서명)</td> </tr> <tr> <td>난민심사관</td> <td>(서명)</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질지(80g/㎡)]</p>		면접조서 내용확인	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본인 확인한	본인은 면접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 또	난민신청자	(서명)	동역인	(서명)	담당공무원	(서명)	난민심사관	(서명)
참석자	난민신청자		성명	국적	생년월일																																							
	담당공무원		성명		생년월일																																							
	동역인		성명	국적	생년월일																																							
	기타		성명	국적	생년월일																																							
	난민신청자와의 관계																																											
일시	시작	년 월 일 시 분																																										
	종료	년 월 일 시 분																																										
	휴식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면접조서 내용확인	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본인 확인한	본인은 면접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 또																																										
난민신청자	(서명)																																											
동역인	(서명)																																											
담당공무원	(서명)																																											
난민심사관	(서명)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서식 및 샘플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 사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통지받고 있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반박이나 소명 없이 기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접 당시 통역인이 확인해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정확성을 달리 검증할 길이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자신의 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적혀 있어도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초적인 문서에 대한 통번역 제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심사기관의 의무에 대해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난민면접조서 및 난민불인정사유서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의 미제공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sup>11</sup>.

<sup>11</sup>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조의2(통역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 4. 마무리

난민인권센터는 ‘문맹인의 난민신청’ 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의 난민심사제도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맹인의 난민신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미흡한 난민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2023. 5.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23-진정-0364500). 오늘의 사례보고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후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연대가 만들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한국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통. 번역 지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https://nancen.org/2329>